



한국형 로스쿨 도입의 쟁점과 전망

박 상 기 |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학장

I. 한국형 로스쿨-현재의 상황

지난 해 12월 28일 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2003-2004)에서 도입을 결정한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으로 불리게 될 것임) 안(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이하 ‘사개추’)에서 5월 통과되었다. 그 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법률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좀 더 구체화되고 있다. 각 법과대학은 입장 차가 조금씩 다르지만 로스쿨 도입 자체에 대한 비판보다는 그 내용에 대하여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다. 각 학교는 로스쿨 인가 여부가 학교의 사활이 걸린 문제로 인식하고 인가를 받기 위하여 경쟁적으로 재정지원을 하고, 교수를 충원하고 있다. 이에 대해 과열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지만 낭비적이라고 보지는 않는다. 신축하는 건물은 그 동안 낙후되었던 법학교육의 교육환경을 격상시킬 수 있을 것이며, 교수확충은 로스쿨과 무관하게도 매우 필요한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로스쿨 도입을 원칙적으

로 반대하면서 법률 서비스 시장을 현재의 규모와 수준으로 유지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WTO 체제 아래에서 법률 서비스 시장 역시 도하개발어젠다(DDA)에 따라 2007년부터는 개방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법률가 양성제도와 변호사 수를 현재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무의미하게 될 것이다.

어떠한 변수가 나타날지 모르지만 만일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된다면 내년 3월부터 6월에 걸쳐 인가신청과 대학별 실사를 포함한 심사를 거쳐 9월까지 로스쿨을 확정하게 될 것이다. 이를 위하여 교육부 산하에 법학교육위원회를 조직하고 이 위원회에서 로스쿨의 인가 및 심사 등을 담당한다.

II. 로스쿨 도입 취지와 필요성

로스쿨은 주지하다시피 미국에서의 법률가 양성제도이다. 특징은 학부를 졸업한 학생을 선발하고, 우리처럼 변호사 시험을 선발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법률적 지식을 검증하는 자격시험으로 두고 있다는 점이다. 미

국에서 로스쿨이 등장한 배경은 역사적으로 형성된 전통에 기인하는 측면과 함께 학부 졸업생이 지적 이해력이나 통찰력이 상대적으로 더 발달하였다는 점에 있다.

우리의 경우 로스쿨 도입의 필요성은 아직도 선발시험의 성격을 지닌 사법시험을 변호사 자격시험화 하여야 할 필요성과, 이를 통하여 폐쇄적이고 특권적이며 이익 집단적 성격을 갖는 법조직역을 개방하여 국민에게 다가서도록 하여야 할 시대적 요청 때문이다. 즉 국민의 다양한 기대와 요청에 부응하는 법률가, 건전한 직업윤리관과 복잡다기한 법적 분쟁을 전문적·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지식과 능력을 갖춘 법률가를 양성하기 위한 것이다. 동시에 국제화 시대에 부응하는 능력을 갖춘 법률가를 양성하는 것도 중요한 목표이다.

현재의 법학교육은 사법시험 제도로 인하여 내용이나 형식에서 매우 제한된 기능만을 수행하고 있으며, 동시에 시험과 관련된 과목 이외에는 교육수요가 별로 없는 상황이다. 연구와 후진양성을 잘 할 수 없으며, 국제적 기업 활동을 펼치는 국내의 대기업 관련 법률업무를 수행하기에는 역부족인 실정이다. 이러한 법률문화환경으로 인하여 국민은 물론 기업 역시 외국 기업처럼 법률적 토대 위에서 기업 활동을 하는 데에 익숙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즉 모든 영역에서 법의 일상화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다. 기업가치에 대한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말이 생겨난 것도 이러한 데에 원인이 있다.

문제는 이것만이 아니다. 국가 간 협정을 체결하거나 무역 등 협상을 하는 경우, 변호사가 대표로 나서지는 못하더라도 법률자문은 필수적인데도 불구하고 충분한 조력을 받지 못하

는 실정이다. 우리에게 지금 시민에 대한 법률 서비스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국가전략 차원에서도 지금과는 다른 법률가의 양성이 시급한 상황이다.

나아가서는 국제기구에 참여하여 활동할 수 있는 법률가의 양성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현재의 법과대학생들은 사법시험 준비를 위하여 거의 서른 살이 되도록 같은 내용의 시험공부만을 계속하고 있다(현재 사법시험 합격자의 평균연령은 29세가 조금 넘음). 그 결과 대학 입학 때에는 가장 우수하던 외국어 실력은 수준 이하로 떨어지고 사회와 유리된 수험생활을 함으로써 사회를 바라보는 시각과 법 인식에서 일반의 상식과 동떨어진 가치관이 형성되고 있다. 이처럼 가장 상식적 판단을 하여야 할 법률가가 고립된 생활 속에서 형성된 사고로 사회적 갈등과 분쟁을 재단하는 위험성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게 되는 것이다.

Ⅲ. 도입예정인 로스쿨의 모습

현재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에서 마련 중인 로스쿨의 규모와 형태는 대략 다음과 같다. 전체 규모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법률 서비스에 대한 국민적 수요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다. 학교당 150명 상한의 로스쿨을 예정하고 있으며 언론에서 예상하는 전체 1,200명 규모는 사실과 다르다. 이 정도 규모의 로스쿨은 현재 사법시험 합격자 수인 1,000명을 배출하기도 어려울 것이다. 80%를 합격시키더라도 960명에 불과하고, 더군다나 성적이나 다른 사정으로 중도 탈락자가 생길 것을 감안하면 겨우 800여 명이나 합격시킬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로스쿨이 예정대로

도입되더라도 2011년에야 첫 졸업생이 배출되고 변호사 시험에 응시하게 될 것인데 지금부터 6년 후의 변호사 배출 인원을 현재의 수준에 맞추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2004년 4월에 개교한 일본의 '법과대학원' 과 같이 너무 많은 규모(약 6,500여 명)의 로스쿨을 인가하고 합격자 수는 30% 정도에 묶는 것은 법학 교육 현상이 다시 시험 합격을 위한 치열한 경쟁으로 치닫고 결국 정상적 교육이 불가능하게 될 정도가 되면 문제이다. 그렇지는 않더라도 지금의 사법시험 인원보다는 많은 규모의 정원 책정은 로스쿨 간 경쟁과 적정수의 법률가를 배출하기 위해서 필수적이다.

그렇다면 최초 도입 시 정원 규모는 개인적으로 약 2,000명 선이 적정하다고 본다. 이 경우 합격률 80%를 유지할 경우 변호사 배출 인원은 약 1,500여 명이 될 것이다. 첫 로스쿨 졸업생이 배출될 6년 후(2011년) 한국 사회는 최소한 이 정도의 변호사는 배출하여야 변호사 간 경쟁(현재와 같은 사건 수임경쟁이 아니라 전문성 경쟁)을 유도하고, 국제적 활동을 할 수 있는 변호사가 나타날 수 있다고 본다. 80% 정도의 합격을 보장할 경우 학생들은 합격만을 위하여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 로스쿨처럼 합격 이후를 생각하는 여유를 갖고 다양한 법률 지식을 축적할 수 있을 것이다. 즉 한국형 로스쿨에서는 변호사 시험 합격 여부가 모든 것을 좌우하는 수험교육이 아니라 대부분의 졸업생에게 변호사 자격증을 부여하므로 교육내용이 보다 다양하고 전문화된 법률지식을 습득하고 성숙한 시민의식을 갖는 법률가 양성이 가능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법률안에서 각 로스쿨 입학정원은

150명 이하로 책정되어 있다. 전체 정원이 적은 상황에서 학교 수를 늘리기 위한 의도라고 본다. 그러나 효과적 교육을 위해서는 적어도 200명 정도는 되어야 할 것이다. 재정적 차원에서도 이 정도 숫자가 유지되어야 교육의 질 저하가 방지되고, 발전을 위한 투자가 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3년의 교육기간 중 취득하여야 할 최저학점은 90학점이 예정되어 있다. 변호사 시험 응시 횟수도 3회로 제한되어 있는데 너무 엄격하다고 생각한다. 학비문제가 언론에서 거론되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에서 대출형식으로 조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등록금이 고액일 것이므로 부유층 자체만이 로스쿨에 진학할 수 있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지만 현재 사법시험 공부에 드는 비용보다는 적게 들 것이 분명하다. 그리고 로스쿨의 교수 수는 최저 20명이고, 학생 대 교수 비율은 12:1로서 아주 엄격하다. 그러므로 만일 학년 당 150명의 로스쿨을 인가받는다면 최소한 38명의 교수가 필요한 셈이다.

IV. 한국형 로스쿨의 발전 모델

교육제도는 피교육자의 사고의 틀, 가치관을 형성하는 중요한 바탕이다. 특히 법률가에게 형평성을 유지하는 가치관이나 공익을 위한 의식, 정의감, 직업적 윤리의식은 매우 중요한 덕목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의 법학 교육제도는 법률가로서의 민주주의적 신념이나 공익에 대한 의식을 강하게 형성할 수 없는 제도적 결함을 지니고 있었다.

또한 현재의 사법시험제도와 법학교육제도는 국제화된 법률 서비스 시장 환경 속에서 활

“

우리나라에 로스쿨을 도입하려는 취지는 선발시험인
사법시험을 자격시험화 하기 위해서이며, 너무 낮은 합격률로 인한
장기간의 수험기간을 단축시켜서 학교 교육기간 중에 보다
다양한 법률지식을 습득하고, 미래를 위한 경험을 축적할 수 있도록 하자는 데에 있다.
소크라테스식 교육방법이 좋다거나 영미법이 우월하다는 사고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

동할 수 있는 법률가 양성이 사실상 불가능한 제도이다. 사법시험과 무관한 과목은 법률가로서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도외시 된다. 법률가 양성과 법학교육제도 역시 국제적 수준에 맞는 제도와 내용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국내법에 대한 지식과 함께 외국의 법제도에 관한 교육이 필수적이다.

다음으로 우리나라에 도입될 로스쿨은 학생 교육뿐만 아니라 취약한 국내 법률 서비스 시장을 개선하기 위하여 변호사에 대한 재교육 기관으로서도 기능을 하여야 한다. 또한 기업에 대한 법률 서비스의 중점이 송무 중심, 즉 재판만을 할 경우에만 제공되는 것을 지양하고 일상적인 기업 활동에 수반하는 법률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로스쿨은 이를 위하여 기업 및 로펌과의 유대관계를 통하여 변호사에 대한 재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학생들에 대한 교육방법이 강의실만이 아니라 로펌과 기업, 공공단체와의 협력을 통하여 현장교육을 병행 실시하여야 한다. 로스쿨이 실무교육만으로 이루지는 것은

아니며 탄탄한 이론교육 위에서 실무적 시각을 갖도록 교육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 사법연수원의 실무수습은 법원과 검찰, 변호사 사무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처럼 한정적인 수습기관으로는 다양한 경험을 축적할 수 없으며, 예비법률가들이 이러한 기관에만 근무하려는 사고를 갖게 할 위험성이 있다. 일반 기업에서도 실무적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기타 공공단체나 시민단체 등에서도 법률실무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V. 글을 마치며

우리나라에 로스쿨을 도입하려는 취지는 선발시험인 사법시험을 자격시험화 하기 위해서이며, 너무 낮은 합격률로 인한 장기간의 수험기간을 단축시켜서 학교 교육기간 중에 보다 다양한 법률지식을 습득하고, 미래를 위한 경험을 축적할 수 있도록 하자는 데에 있다. 소크라테스식 교육방법이 좋다거나 영미법이 우월하다는 사고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또한 단순히 변호사를 많이 선발하자는 취지도 아니

다. 변호사를 시험이 아니라 교육을 통하여 배출하고, 교육의 내용을 다양하고 풍부하게 함으로써 젊은 법률가의 성장 잠재력을 확장시키려는 것이 로스쿨 도입의 목적이다.

로스쿨의 도입은 한국의 법과대학에는 도전이면서 동시에 아주 좋은 기회이다. 법과대학간 종래의 양적 경쟁을 질적 경쟁으로, 국내 경쟁에서 국제적 경쟁으로 법학교육의 패러다임을 바꿀 것이다. 로스쿨은 서열화된 국내 대학의 구조를 바꿀 수도 있다. 왜냐하면 변호사에 대한 평가가 특정 대학 출신이라는 이유보다는 구체적인 능력위주로 평가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동시에 각 로스쿨은 동일 학부 출신 선발을 3분의 1 이하로 제한할 것이기 때문에 결국 서울의 주요대학 로스쿨 입학생은 출신학부가 다양할 것이다. 이 점 역시 로스쿨이 대학의 서열구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원인이라고 본다.

끝으로 로스쿨은 위기에 처한 인문학을 살리고 학부교육을 정상화시키며, 대학입시경쟁을 일부나마 완화하는 데에 기여할 것이다. 교육부가 로스쿨 도입에 적극적인 이유도 여기에 있다. 법학을 공부하기 위하여 법대로 진학하지 않고 다른 전공을 공부하면 되기 때문이다. 지금처럼 법학 이외 전공 학생들이 학부 전공을 포기한 채 사법시험 준비에만 매달리는 폐해는 사라질 것이다.

우리는 지금까지 사법의 민주화를 주장하였지만 이를 이루는 토대인 법학교육제도 개혁은 이루지 못하였다. 일본 제국주의 시대에 식민지 통치에 순응하는 사법관료를 선발하는 방식을 독립국가가 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온 결과 법치주의 발전은 뒤쳐지고, 법과 사법제도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깊어만 갔다. 국회에서 어떻게 내용이 바뀔지 모르지만 국민의 의지를 거스르는 변경은 어려울 것으로 본다. 국가발전에 부합하는 수준의 사법제도가 확립되는 것은 법치주의의 확립을 위해서도 대단히 중요한 일이다. ■■

박상기

연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독일 괴팅겐대학교에서 법학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 연세대학교 법과대학장·법무대학원장으로 재직 중이며, 한국형사법학회 회장, 동덕여자대학교 재단이사장직을 맡고 있다. 주요 저서로는 『형법총론』, 『형법각론』, 『독일형법사』, 『형사정책』 등이 있다.